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5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9.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9.9.10.

다. 상정일자: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9.25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남종운】

### 가. 제안이유

출판문화 중심의 '창작활동·창업지원' 공간 및 출판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로 확대·재생산 되는 창조적 복합문화공간인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민간위탁의 목적

가) 생산과 창작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한 출판문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인 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창업공간과 문화공간에 대한 이해도가

뛰어나고,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

나) 민간 운영의 창의성과 참신성 및 유연성으로 사업의 조기 정착 도모

## 2) 민간위탁의 내용

가) 위탁기간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

나) 위탁운영 시설현황

- 시설명: 출판문화진흥센터
- 위 치: 마포구 신촌로2길 19
- 면 적: 2,438.98 $m^2$  (2층 및 3층 일부)

다) 위탁사무 범위: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

- 출판문화 중심의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, 컨설팅·홍보 등 성장 지원
- 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기획·정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출판문화 진흥 사업 추진 등

라) 소요예산: 736백만 원

마)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모집

바) 수탁기관 선정주체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## 3) 추진 일정

가) 공개모집 공고 : 2019. 10. 23.

나) 신청서 접수 : 2019. 12. 3. ~ 12. 6.

다) 선정 심사 : 2019. 12. 9. ~ 12. 13. (기간 중 1일)

라) 심사결과 발표 : 2019. 12. 17.

마) 협약 체결 : 2019. 12. 27.

바) 위탁 운영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 (3년)

※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종모)

#### ○ 본 동의안은

출판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마포구에 '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 문화진흥센터'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- 출판문화 중심의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, 컨설팅·홍보업무와 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다양한 출판문화 진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 시설의 사무를 고려해보건대 출판문화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이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이 시설의 주요 공간계획을 살펴보면, 2층에 문화공간으로 북&라운지, 쇼윈도, 카페, 다목적실이 설치되며, 창작공간으로 워크 플레이스, 편집실, 멀티미디어실 등이, 지원공간으로 지원사무실, 폰부스, 락커 등이 설치되고 3층 업무공간은 입주 공간, 미니 라운지, 회의실, OA룸 등으로 구성됨.
- 운영관리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, 총괄 매니저 1명, 매니저 1명, 운영지원팀 3명으로 총 6명임.
-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소요예산을 보면 사업시행 1차 연도에 임대료, 관리비 등 세입 215,425천 원이고, 민간위탁금인 인건비, 사업운영비 736,261천 원과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인 시설관리비 263,727천 원

등 세출은 999,988천 원으로, 세입과 세출 차액 총 784,563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재원은 모두 구비로 충당될 예정임.

- 마포구 등록 출판사가 4,088개로 강남구에 이어 2번째로 많고 ‘경의선 책거리’를 비롯하여 ‘한국출판콘텐츠센터’, 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’ 등 출판문화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서교동, 연남동을 중심으로 독립출판 서점이 증가하고 있어 ‘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’는 이들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마포구 출판문화 생태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 784,563천 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이 수반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국·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※ 참고자료 - 출판문화진흥센터 시설 현황

○ 위치: 동교동 190-1일대(홍대복합역사 내 공공업무시설)

○ 규모: 2층 및 3층 일부 2,438.98㎡ (전체 지상 5층 5,426.30㎡)

층	용도	면적 계(㎡)		
		계	전용면적	공용면적
계		5,426.30	4,237.41	1,188.89
소계		2,987.32	2,332.84	654.48
5	(가칭)서울디자인창업센터 (서울시 디자인정책과)	1,083.52	846.10	237.42
4		1,412.11	1,102.76	309.35
3		491.69	383.98	107.71
소계		2,438.98	1,904.57	534.41
3	(가칭)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(마포구 문화진흥과)	918.12	716.96	201.16
2		1,520.86	1,187.61	333.25
1	전체공용(필로티)	(176.17)		층별공용면적 포함

【관련 법령】

<지방자치법>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**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<문화예술진흥법>

**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<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>

**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

**제6조(사업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<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, (제정 예정)

**제13조(운영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조건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